

## 1. 연결실체 주식기준보상 거래

주식기준보상 거래에 있어서 한 회사의 종업원이 동일한 연결실체 내의 다른 회사-일반적으로 지배회사-로부터 주식 또는 주식선택권을 부여 받는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국적기업의 상장지배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전세계 종속회사의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102호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동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주식거래 및 자기주식거래’ 및 동 해석서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 초안 등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러한 거래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연결실체 주식기준보상 거래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 **연결실체 주식기준보상 거래란 무엇인가?**

연결실체 주식기준보상 거래란 동일 연결실체 내의 둘 이상의 회사가 관여하는 주식기준보상 거래를 의미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주식거래 및 자기주식거래’에서는 이러한 거래의 회계처리는 부여하는 실체, 즉 종업원에게 지분상품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실체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종업원과 거래 약정을 맺는 실체

상기의 약정이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

과거 실무

### **연결실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거래의 회계처리**

다음에서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부여 주체에 따른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별도 재무제표상의 회계처리를 설명한다.

지배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종속회사 종업원에게 부여 종속회사: 추가 의무 없음 - 종속회사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

종속회사의 회계처리: 차변)주식기준보상비용      대변)자본  
지배회사의 회계처리: 차변)투자주식                대변)자본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주식을 자신의 종업원에게 부여  
종속회사: 추가 의무 부담 - 종속회사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종속회사의 회계처리: 차변)주식기준보상비용      대변)부채  
지배회사의 회계처리: 해당사항 없음

#### 연결실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거래의 회계처리

연결실체가 종속회사의 종업원에게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는 경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02호 및 해석서 제2111호에 대한 개정 초안에서 언급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동 개정 초안에 따른 회계처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종업원에게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부여  
종속회사: 정산 의무 없음- 현금결제형으로 회계처리 하되, 자본으로 인식

종속회사의 회계처리: 차변)주식기준보상비용    대변)자본(공정가치 변동 반영\*)  
지배회사의 회계처리: 차변)투자주식            대변)부채

\* 지배회사가 주식기준보상 관련 부채를 정산하는 시점까지 동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액을 종속회사의 자본에 반영함.

종속회사가 자신의 종업원에게 지배회사의 주식에 기초한 현금결제형 주식  
기준보상 부여  
종속회사: 정산 의무 부담 - 종속회사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종속회사의 회계처리: 차변)주식기준보상비용      대변)부채  
지배회사의 회계처리: 해당사항 없음

**연결실체 주식기준보상 거래와 관련하여 실체간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회계처리**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종업원에게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고, 자회사에게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주식기준보상 거래와 정산 간의 명백한 관련성 유무에 따라 회계처리가 상이하다.

주식기준보상 거래와 정산 간의 명백한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

종속회사가 자신의 종업원에게 부여된 지배회사 주식의 공정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배회사에 정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종속회사는 기존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인식한 자본과 정산 금액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기존의 인식한 자본의 금액을 초과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지배회사에 대한 배당으로 회계처리한다.

사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종업원에게 공정가치 1,200원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고, 동 거래에 대한 정산을 종속회사에게 요구하였다. 정산 금액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1,500원으로 산정되었다.

	종속회사 회계처리	지배회사 회계처리
주식기준보 상 부여시	차변) 비용 1,200 대변) 자본 1,200	차변) 투자주식 1,200 대변) 자본 1,200
정산시	차변) 자본 1,200 배당금(이익잉여금) 300 대변) 현금 1,500	차변) 현금 1,500 대변) 투자주식 1,200 배당수익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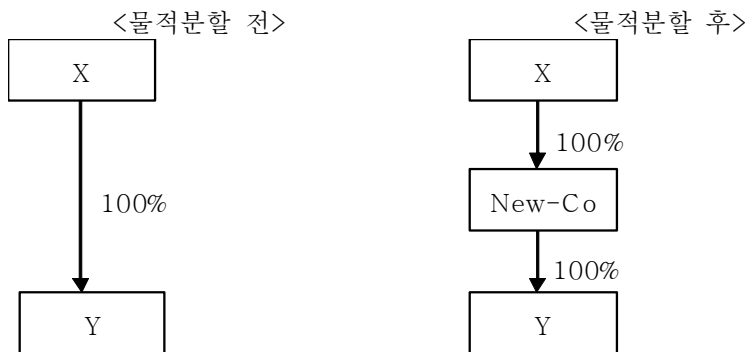
주식기준보상 거래와 정산 간의 명백한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비용 정산과 동일하게 종속회사의 비용으로 회계처리 한다.

작성: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유승경 회계사

## 2. 신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원가 측정

X사는 Y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X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Y주식을 원가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09년말 X사는 물적분할을 실시하였으며 신설된 New-Co로 Y주식을 이전하고 New-Co는 X사에 지분을 발행하였다. 물적분할 직전 X사가 X사의 별도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던 Y주식의 장부가액은 100이며, 물적 분할 직전 Y사의 별도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은 400이다. 또한, 물적 분할 시점의 Y주식의 공정가치는 500이다.

물적분할 전후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다.



상기 거래에서 X 및 New-Co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새롭게 취득하는 Newco와 Y의 지분가액을 각각 얼마로 계상할 것인가?

기업이 새로운 종속기업을 설립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속기업 주식을 이전하고 새로운 종속기업의 지분을 받는 지분교환거래로 지배구조를 재편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거래는 자산을 이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질의 변동이 없는 교환거래이므로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손익을 인식할 수 없다.

2008년 5월 발표된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개정내용은 상기 유형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 Newco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인식되어야 할 투자주식가액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동 개정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으로, 지배기업(이하 "원지배기업"으로 언급됨) 이 자신의 지배기업으로 신기업(이하 "신지배기업"으로 언급됨.) 을 설립하는 경우, 신지배기업은 원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상 순자산에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을 투자주식장부가액으로 측정한다.(기준서 1027호 문단 38B).

(단, 신지배기업은 자산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 주식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임)

- 신지배기업이 원지배기업의 기존 지분상품과 교환하면서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원지배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함.
- 신연결실체와 원연결실체의 자산과 부채가 재편성 직전 및 직후에 동일함.
- 재편성 전 원지배기업의 소유주는 재편성 직전 및 직후 원연결실체의 순자산과 신연결실체의 순자산에 대해 절대적, 상대적 지분이 동일함.

지배기업이 아닌 기업이 신기업을 자신의 지배기업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세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상기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기준서 1027호 문단 38C). 또한, 신지배기업이 원지배기업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지는 않지만 일부 취득으로 지배력을 얻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A사는 B주식을 70% 보유하고 있고 제 3자가 B사를 30% 보유한 상황에서 신지배기업 N이 자신의 지분을 A에게 100% 발행하고 B주식을 70% 소유하게 되고 제 3자가 여전히

30%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이다.(기준서 1027호 BC66).

위 조건을 만족하는 거래의 유형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신 지배기업이 취득하게 되는 원지배기업(또는 원기업)의 순자산가액이 (-)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위 조건을 만족하는 거래의 유형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신 지배기업이 취득하게 되는 원지배기업(또는 원기업)의 순자산가액이 (-)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투자 주식의 (-) 순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재 회사가 부담하게 될 의무가 아니므로 개념체계에 따른 부채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해당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은 "0"으로 계상될 것이다

위 사례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New-Co는 Y주식의 지분과 교환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발행하여 Y주식의 지배력을 취득하였으며, 재편성 직전과 직후의 신연결실체(New-Co와 Y)의 자산·부채와 순자산에 대한 지분율은 원연결실체(기업 X와 기업 Y)에서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기준서 1027호 문단 38B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X 입장에서는 이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거래이다. Y주식과 New-Co 주식의 교환으로 X사는 현금흐름의 구성이나 변동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없으므로, X의 별도재무제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변) 투자주식-New-Co            100                      대변) 투자주식 - Y            100

New-Co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취득하는 종속회사의 별도재무제표상 순자산 중 회사의 지분상당액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된다.

차변) 투자주식-Y                      400                      대변) 자본등                      400

만약, 위 교환의 거래가 기준서 1027호 문단 38B의 요건(거래직전 및 직후 자산 부채의 동일, 상대적 절대적 지분이 동일)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Newco의 별도재무제표상 Y지분의 원가는 취득한 지분의 공정가치인 500으로 계상될 것이다.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엄경순 회계사

### 3. IFRS 7 금융상품: 공시 개정내용

2008년 10월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유동성위험에 관한 공시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IFRS 7에 대한 개정 공개초안 '금융상품에 관한 공시의 개선(Improving Disclosures about Financial Instruments)'을 발표하였다. IASB는 공개초안에 대한 접수된 외부검토의견서를 검토한 후, 2009년 3월에 IFRS 7의 개정을 발표하였으며, 개정사항을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기간부터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반적으로는 개정의 시행일은 발표 후 6~18개월 후이지만, 금융상품에 관한 향상된 공시에 대한 긴급한 요구로 인해 더 빨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공시사항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개정된 내용은 1) 공정가치 서열에 대한 공시 및 2) 파생상품 관련 유동성위험에 대한 공시사항의 변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공정가치 서열에 대한 공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에서는 공정가치의 측정과 관련하여 활성화된 시장에서의 공시가격이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이며, 이러한 활성화된 시장에서의 공시가격이 없을 경우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G 71, 74) 반면 미국 회계기준(FAS 157)에서는 공정가치 측정의 투입변수의 특징에 따라 공정가치의 서열체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Level 1: 활성화시장에서의 공시가격(동일한 자산, 부채에 대한 활성화된 시장에서의 공시가격으로, 공시된 가격에 대한 조정 등이 없는 경우이어야 함.)
- Level 2: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이지만, Level 1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령, 활성화된 시장이 있는 유사한 자산, 부채의 공시가격, 비활성화된 시장에서의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자산, 부채의 공시가격 등)
- Level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가정에 의한 투입변수이지만, 이러한 가정은 시장참여자들이 어떻게 가격을 고려할 것이라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7호 개정에서는 위 FAS 157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개념을

도입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해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다음의 내용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공정가치 수준(level)에 따라 구분된 공정가치측정치 전체가 분류된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준 2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과 그 이유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의 공정가치측정치의 경우,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차이조정
- Level 3의 공정가치측정치의 경우,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를 합리적으로 가능한 대안적 가정에 따른 투입변수로 변경하는 것이 공정가치를 유의적으로 변동시킨다면, 그러한 사실과 그러한 변경의 효과를 공시

공정가치 level에 대한 공시사항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관점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 금융부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공시요구 사항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의 level에 대한 공시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객관적이지 않은 Level 3 공정가치에 대해 보다 상세한 공시(기초와 기말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투입변수 변경에 따른 효과에 대한 공시 등)를 요구함으로써 정보이용자들에게 공정가치에 대한 보다 유의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

## 2) 파생상품 관련 유동성위험에 대한 공시사항의 변경

개정 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7호 문단 39에서는 유동성위험과 관련하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에서는 비파생금융부채와 파생금융부채로 구분하여, 비파생금융부채의 경우에는 잔존계약만기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파생금융부채의 경우에는 계약상 만기가 현금흐름의 시기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경우에 잔존계약만기를 만기분석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이 반영된 이유는 일부 파생금융부채의 경우에는 잔존계약만기에 근거한 공시를 제공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적용이 어려웠으며, 또한 그러한 요구사항이 많은 기업이 그러한 금융상품의 유동성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반영하는 정보를 항상 보여주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IASB는 일부 상황의 경우 파생금융부채에 대한 계약상 만기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종전의 요구사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비파생금융부채와 일부 파생금융부채(\*)에 대한 최소한의 계약상 만기공시는 유지하였는데, 이러한 금융부채에서

계약상 만기는 부채와 관련된 현금흐름의 시기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 계약상 만기정보가 현금흐름의 시기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파생금융부채의 예로는 변동이자율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대한 현금흐름 위험회피에서 잔존만기가 5년인 이자율스왑을 고려할 수 있다.(IFRS 7 문단 B11B)

작성: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김수완 회계사